제22회 희망 중소기업 포럼

상법적 측면에서 본 중소기업관련법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9. 11. 12.

권 종 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U KONKUK UNINERSITY

목 차



Ⅰ. 2009년 5월 개정상법

Ⅱ. 경영권방어

Ⅲ. 2008년 상법개정안

Ⅳ. 2009년 경영권방어법제 위원회초안

Ⅴ. 회계참여제도

Ⅵ. 산업활력재생법에 의한 중소기업지원

KU KONKUK UNINERSITY

Ⅰ. ’09. 5월 개정상법



상법개정
경영권방어
상법개정안
위원회초안
회계참여제도
중소기업지원

1. 소규모회사 범위 확대

- 자본금총액 10억원 미만의 회사

* 개정전의 경우 자본금총액 5억원 미만의 회사

2. 창업절차의 간소화

3. 주주총회절차의 간소화

4. 지배구조의 유연화

KU KONKUK UNINERSITY

1. 창업절차의 간소화



■ 발기설립의 경우 정관의 공증의무면제(제292조)

- 소규모회사가 발기설립하는 경우 창업자들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정관의 효력발생
- 공증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신속하고 저렴한 창업을 가능하게 하여 활발한 투자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 발기설립의 경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잔고증명서로 대체(제318조)

- 주식회사 설립시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발급절차가 번거로워 신속한 창업에 지장을 초래
- 소규모회사가 발기설립을 하는 경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

KU KONKUK UNINERSITY

2. 주주총회절차의 간소화



■ 소집절차의 간소화

- 주주총회소집통지기간을 주주총회일 10일전으로 단축
-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 소집절차생략

■ 서면결의허용

-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한 결의인정

■ 전자투표제 도입

-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행사

➢ 주주총회소집절차의 간소화와 전자투표제의 도입으로 주주총회개최와 관련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

KU KONKUK UNINERSITY

3. 지배구조의 유연화



■감사선임의 면제(제409조)

- 소규모회사의 설립시 감사 선임 여부는 회사의 임의적 선택사항

-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이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관하여 직접 감독·감시.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서는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대해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
- 회사의 사정에 따라 감사 선임 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KU KONKUK UNINERSITY

Ⅱ. 경영권방어



상법개정
경영권방어
상법개정안
위원회초안
회계참여제도
중소기업지원

■주식양도제한제도(상법 제335조)

-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주식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강제하는 것이 가능
- 주식양도제한회사의 경우 상장이 금지되므로 비상장·중소기업에만 사용가능
  - ➢ 경영권자의 의사에 반해 경영권이 이전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차단
  - ➢ 동업창업에서 경영권분쟁이 발생하여 동업자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 양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적대적M&A도 저지가능

KU KONKUK UNINERSITY

Ⅲ. 2008년 상법개정안



■종류주식의 다양화

(1) 의결권제한주식

(2) 양도제한주식

(3) 상환주식

(4) 전환주식

(5) 거부권부주식

(6) 임원선해임권부주식

- 2008년 상법개정안: 거부권부주식과 임원선해임권부주식 삭제
- 2009년 경영권방어법제개선위원회의 개정초안: 거부권부주식. 이사선해임권부주식, 복수의결권주식, 주주총회특별결의요건가중, 신주인수선택권제도 도입

KU KONKUK UNINERSITY

1. 의결권제한주식



상법개정
경영권방어
상법개정안
위원회초안
회계참여제도
중소기업지원

1. 의의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내용이 다른 주식
- 모든 결의사항에 관해 의결권이 없거나(완전무의결권주식), 특정사안(예컨대 이사의 선임, 재무제표의 승인)에 관해서만 의결권이 있거나 혹은 없는 것

2. 용도

(1) 주주간계약의 회사법상 유효화

- 중소기업의 동업자나 합작회사의 파트너간에 지분비율에 상관없이 의결권비율을 동일하게 하고자 할 때 지분비율이 높은 쪽의 주식의 일부를 의결권제한주식으로 하는 경우

KU KONKUK UNINERSITY

1. 의결권제한주식



➢ 공동출자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면서 당사자간에 예컨대 지분비율은 6대4로 하더라도 의결권 비율은 1:1로 하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음. 그러나 이 계약을 위반하여 의결권행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주주총회의 효력은 부정할 수 없고, 단지 채무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묻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수파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일부를 의결권제한주식(완전무의결권주식)으로 하면 주주간의 계약을 회사법적으로도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있음

(2) 방어수단으로서 활용

- 정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의결권제한주식으로 하는 방법
-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만 의결권제한주식으로 하는 방법

KU KONKUK UNINERSITY

2. 양도제한주식



1. 의의

- 주식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점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주식

➢ 현행상법에서는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려면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개정안에 의하면 회사는 정관을 통해 주식의 종류별로 양도제한주식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발행주식의 일부를 양도제한주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 따라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창업자나 중요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제한으로 하는 것도 가능

KU KONKUK UNINERSITY

2. 양도제한주식



2. 방어수단으로서 활용

- 주식수를 기준으로 일정수 이상의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제한을 하는 방법. 즉 지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예컨대 발행주식총수의 20%이상)의 양도에 대해서만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그 이외의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를 자유롭게 하는 방법
  - ➢ 이 방법은 처음부터 주식에 대해 양도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양도제한이 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음. 독일이나 스위스에서는 이 방식이 방어수단으로서 널리 쓰이고 있음
- 양도제한주식은 방어수단으로 이용되는 주식이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 예를 들면 거부권주식이나 임원선해임권부주식을 우호적인 제3자에게 배정하면서 이를 양도제한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그것

KU KONKUK UNINERSITY

3. 상환주식



상법개정
경영권방어
상법개정안
위원회초안
회계참여제도
중소기업지원

1. 의의

- 주식의 상환, 즉 이익으로써 하는 주식소각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주식
  - ➢ 현행상법에서는 대상주식과 상환재원에 대해서는 이익배당우선주식에 한해 배당가능이익으로만 상환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 그 결과 이익배당우선주 이외의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회사가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한 재원규제와 관련해서도 현금 이외에 유가증권이나 기타 재산을 대가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논란
- 개정안에서는 상환주식을 회사측에 상환권이 있는 것 (상환조항부주식)과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있는 것 (상환청구권부주식)으로 구분한 다음, 상환의 대가는 현금 이외에도 유가증권, 그 밖의 자산(사채 등)도 가능한 것으로 함. 다만 "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 그 이유는 다른 종류의 주식을 대가로 하게 되면 그것은 전환주식이 되기 때문
- 상환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의결권제한주식, 양도제한주식에 한해 발행할 수 있도록 함. 상환주식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보통주식을 상환주식으로 발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KU KONKUK UNINERSITY

3. 상환주식



2. 방어수단으로서 활용

➢ 현행상법에서 우선배당주식으로 국한된 상환주식의 대상을 개정안에서는 종류주식의 전반으로 확대한 것은 회사로 하여금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주식을 기동적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무전략적인 측면에서 유연성을 갖도록 하기 위함

- 방어수단의 활용도는 매우 낮음

➢ (ⅰ) 보통주식은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없고 (ii) 대가로는 종류주식을 교부할 수 없음. 방어수단으로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대적 매수자의 주식(보통주식)을 강제로 상환하는 것이나 (ⅰ)은 그것이 불가능함을 의미

➢ 상환주식을 이용한 방어수단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주주에 대해 우선주를 상환주식으로 발행하여 무상으로 배정하고 유사시에 적대적 매수자를 제외한 일반주주로부터 우선주를 강제상환하면서 그 대가로 보통주식을 교부하는 것이나 (ii)는 그것이 불가능함을 의미

KU KONKUK UNINERSITY

4. 전환주식



1. 의의

- 주식의 전환, 즉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내용이 다른 주식
  - ➢ 현행상법에 의하면 전환주식의 전환은 주주의 청구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회사는 할 수 없음. 그 때문에 회사로서는 배당압력을 피하기 위해 우선주를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업공개나 구조조정과정에서 종류주식의 단순화, 주주관리비용의 절감 등을 목적으로 전환주식을 활용하는 것도 여의치 않음
- 전환주식을 회사측에 전환권이 있는 것(전환조항부주식)과 주주측에 전환청구권이 있는 것(전환청구권부주식)으로 이원화
- 전환의 대가는 다른 종류주식으로만 국한하고 현금, 유가증권 기타 재산을 교부하는 것은 제외. 전환주식이 상환주식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KU KONKUK UNINERSITY

4. 전환주식



2. 방어수단으로 활용

- 종류주식이 다양화된 결과 전환대상주식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종류주식간의 조합에 있어서 전환주식의 촉매제로서의 기능이 증대되었음은 주목할 만함

➢ 의결권제한주식이 종류주식의 한 유형으로 도입됨으로써 보통주식을 전환조항부주식으로 발행하면서 전환대상주식을 의결권제한주식으로 하면 사실상 포이즌필과 유사한 방어수단이 되기 때문

KU KONKUK UNINERSITY

Ⅳ. 2009년 경영권방어법제 위원회 개정초안



1.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 가중
2. 복수의결권주식
3. 동의권부주식
4. 이사선해임권부주식
5. 신주인수선택권

KU KONKUK UNINERSITY

1. 주주총회특별결의 요건 가중



(1) 의의 및 취지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관해 결의요건을 정관을 통해 가중하고, 가중한 결의요건을 변경할 때에는 그 가중된 결의요건으로 정관변경을 하여야 함

  ➢ 이사의 해임에 관해 현행의 특별결의요건을 예컨대 "출석주주의결권의 90%와 발행주식총수의 70%"로 가중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정관규정을 변경하려면 현행특별결의요건이 아니라 가중된 요건에 따라야 함

* 외국의 경우 보편화된 제도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가증권상장회사나 코스닥상장회사의 일부가 도입

KU KONKUK UNINERSITY

1. 주주총회특별결의 요건 가중



(2) 용도

1) 방어수단

예컨대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를 모두 선임한 회사에서 이사의 임기가 3년이고 그 잔여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회사에서 이사의 해임요건을 가중하게 되면 인수기업이 지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가중된 요건이 높을 경우에는 경영권장악이 불가능

2) 주주간 계약을 회사법적으로도 유효한 것으로 하는 수단으로서 이용

중소·벤처기업에서 1대주주와 2대주주간에 계약으로 지분비율 20%의 2대주주에게 이사나 감사의 해임에 관해 동의권(거부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본 제도를 이용하여 이사나 감사의 해임요건을 총지분의 81%이상으로 정하게 되면 2대주주에게 이사나 감사의 해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의권을 부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합작회사의 경우에는 주요 경영사항(합병, 영업양도, 경영위임 등)에 관하여 소수당사자의 veto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

KU KONKUK UNINERSITY

2. 복수의결권주식



(1) 의의 및 취지

- 의결권수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주식. 다만 위원회가 도입하려는 것은 의결권보통주(1주 1의결권)에 비해 최고 3배까지 의결권이 많은 복수의결권주식
  - 차등의결권주식에는 소수의결권주식(예컨대 0.3의결권) 단원주도 있음. 이러한 주식의 경우에는 일정주식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의결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금흐름과 지배권괴리가 더욱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어 복수의결권제도만 도입하기로 함.1주당 의결권의 수를 3개로 제한한 것도 그러한 취지
- 다만 복수의결권주식은 원시정관 또는 총주주의 동의로 변경한 정관에 규정이 있을 때에만 도입가능
- 일단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한 경우에는 의결권제한주식을 발행할 수 없고, 반대로 의결권제한주식을 도입한 회사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없음.
  - 의결권제한주식과 복수의결권주식의 병용을 금지함으로써 소액의 투자로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KU KONKUK UNINERSITY

2. 복수의결권주식



(2) 용도

- 동제도의 도입에는 원시정관이나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변경정관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상장회사의 경우 방어수단으로서의 효용은 없음
-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간의 계약을 회사법적으로도 유효하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활용도는 매우 큼

➢ 창업자에게는 경영권을 보장해 주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투자를 촉진하는 촉매로서의 역할도 기대

➢ 특히 아이디어나 기술을 바탕으로 한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는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배당은 지분비율에 따르되 경영권만은 유지하길 바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이러한 때에는 후술의 이사선해임권부주식을 활용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신이 과반수이사를 선임하기에 충분한 복수의결권주식을 갖는 방법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KU KONKUK UNINERSITY

3. 동의권부주식



(1) 의의 및 취지

- 주주총회결의 사항 중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해 당해결의 외에 특정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점에 있어서 다른 주식과 내용이 다른 주식. 즉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중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해 특정종류주주총회의 종류주주에게 동의권이 있는 주식을 말함

- 동의권의 대상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법정결의사항일 필요는 없고, 고문변호사의 선임과 같이 법정결의사항이 아니더라도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면(임의결의사항)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동의권부주식의 도입은 원시정관이나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변경정관으로만 가능하며(제2항),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도입 자체를 금지

KU KONKUK UNINERSITY

3. 동의권부주식



(2) 용도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발행할 수 없음으로 상장회사와는 무관

■ 비상장의 중소기업이나 폐쇄회사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 ➢ 합작회사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출자는 하되 경영에는 참가하지 않는' 동업자나 사업파트너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동의권부주식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됨
- ➢ 중소기업 등에서 사업승계의 경우에도 동의권부주식은 활용의 여지가 많음

KU KONKUK UNINERSITY

4. 이사선해임권부주식



상법개정
경영권방어
상법개정안
위원회초안
회계참여제도
중소기업지원

(1) 의의 및 취지

- 종류주주총회에서 선해임할 수 있는 이사의 수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주식
  - ➢ 이 주식이 발행되면 원칙적으로 이사의 선해임은 각 종류주주총회 단위로 행하여지며 전체 주주총회는 개최되지 않음

- 동의권부주식과 마찬가지로 원시정관이나 주주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변경된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입할 수 있으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도입자체가 금지

KU KONKUK UNINERSITY

4. 이사선해임권부주식



(2) 용도

- 비상장·폐쇄회사의 경우 경영기재로서의 효용은 매우 높음
  - ➢ 종류주주총회 단위로 이사를 선해임하는 방법은 미국에서는 합작회사나 벤처기업등에서 주주간 계약"으로 합의한 수의 이사를 각파가 선임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널리 이용. 예를 들면 A가 90%의 주식(90주)을 소유하고, B가 10%의 주식(10주)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3명의 이사를 선임하면서 그 중 1명에 대해서는 B가 선임권을 갖는 것으로 A와 B가 약정한 경우, 이때에는 이사선해임권부주식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그 약정을 실현할 수 있음. 먼저 정관으로 A소유의 주식은 A종류주식으로 하고 B소유주식은 B종류주식으로 한 다음 A종류주식에는 이사 2명에 대한 선임권을, B종류주식에는 이사 1명에 대한 선임권을 각각 부여하고, 각 종류주주총회에서 해당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면 되기 때문

- 이사선해임권부주식은 기본적으로 특정종류의 주주에게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임원의 선임권을 인정하는 제도.미국은 물론이고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일찍부터 이용되어 왔음. 특히 주주간 계약에 대해 관대한 미국에서는 우선주를 발행한 회사가 무배당결의를 한 때 우선주주에게 이사선임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경우도 많음

KU KONKUK UNINERSITY

5. 신주인수선택권



(1) 의의

-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회사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warrant)

  ➢ 신주인수권과의 차이

  - 신주인수권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그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리. 즉 신주인수권은 이사회에서 신주발행결의를 할 때 발생하나 신주인수선택권은 신주인수권자와 계약에 의해 발생

KU KONKUK UNINERSITY

5. 신주인수선택권



상법개정
경영권방어
상법개정안
위원회초안
회계참여제도
중소기업지원

(2) 용도

- ➢ 스톡옵션
- ➢ 자금조달수단
  - ✓ 주식과 결합, 사채와 결합(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자본차입시 옵션으로 활용 등
  - ✓ 특히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큼
- ➢ 업무제휴 등
  - ✓ 거래처에 배정, 고문변호사 등에 고문료에 대신하여 교부,
- ➢ 경영권방어수단으로서 활용(포이즌필)
- ◆ 위원회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경영권방어수단으로서의 활용

KU KONKUK UNINERSITY

6. 도입가능성



(1) 신주인수선택권을 제외한 다음 제도는 도입가능성이 매우 낮음

①주주총회 특별요건 가중

②복수의결권주식

③동의권부주식

④이사선해임권부주식

(2) 그 이유

- 추진주체의 미온적 태도
- 경제부처간의 이해상충

KU KONKUK UNINERSITY

Ⅴ. 회계참여제도



1. 현행제도

- 감사는 업무감사권과 회계감사권을 가짐. 다만 외감법적용회사의 경우에는 회계감사는 외부감사인에 의해서도 이루어짐

2. 문제

(1)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의 확보가 곤란

(2)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는 신뢰성은 높지만 비용이 많이 듬

(3) 일본의 문제해결

1) 과도한 부담 없이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참여제도를 도입하여 회계전문가가 이사와 공동으로 회계서류를 작성하도록 함.

2) 회계참여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담당. 제무제표 등 회계서류작성이 업무. 회계참여의 선임은 회사의 임의이나 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에 갈음할 수 있음

KU KONKUK UNINERSITY

1. 회계참여의 직무 등



(1) 설치

회사의 재량

(2) 직무

1)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의 작성
2) 주주총회에서 설명
3)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의 보존(5년간)
4) 주주·채권자에 대한 공시

(3) 자격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4) 겸임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외부감사인, 지배인등과의 겸임불가

(5) 선임 : 주주총회

(6) 임기·보수 : 이사와 동일

(7) 책임 :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의 작성에 관해 임무해태가 있었던 경우,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짐. 회사에 대한 책임의 경우 일부 면제가 가능. 주주대표소송의 대상

KU KONKUK UNIVERSITY

2. 기대효과



(1)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실태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 이 경우 금융기관의 융자조건은 부동산담보나 이사의 연대보증이 통상

2) 부동산가치의 하락이나 기업의 도산 시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로서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이사 등에 대해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결과가 됨

(2) 해결방안

중소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이 여신을 하도록 유도. 그 결과로서 재무제표의 투명성확보도 기대

(3) 실태

회계참여가 참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기관이 융자 시 우대금리를 적용

KU KONKUK UNINERSITY

VI. 산업활력재생법에의한 중소기업지원



상법개정
경영권방어
상법개정안
위원회초안
회계참여제도
중소기업지원

1. 산업활력재생법

일본의 장기경제불황과정에서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1999년에 한시법으로 제정. 이후 법개정을 통해 적용대상 및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2. 산업활력재생법의 적용대상

(1) 사업 재구축 : 그룹 내 구조조정 등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경우
(2) 경영자원재활용 : 다른 기업으로부터 사업부문을 인수(승계)하는 경우
(3) 공동사업재편 : 2이상의 사업자가 과잉설비를 폐기하고 첨단분야 등에 투자하는 경우
(4) 채무면제대상기업지원 : 상기 계획에 더하여 채무면제를 받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사업혁신설비 도입 : 사업혁신설비(국내 최초도입설비, 신기술설비 등)를 도입하는 경우
(6) 기술활용 사업혁신 : 사업제휴, 연구개발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우
(7) 경영자원융합 : 2이상의 사업자가 경영자원을 통합하여 특정사업에 집중하는 경우

KU KONKUK UNINERSITY

1.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상법개정
경영권방어
상법개정안
위원회초안
회계참여제도
중소기업지원

(1)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경영자원재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금융공고, 성공조합중앙금고로부터 저리융자를 받는 것이 가능

1) 기존사업자에 의해 유효하게 활용되지 않은 경영자원을 다른 중소기업이 매수하여 생산성이 높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소기업에 의한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저리로 융자

2) 설비자금의 경우 7억 2천만엔 까지, 운전자금의 경우 2억 5천만엔 까지 융자

(2)중소기업 기반정비기구에 의한 채무보증

외국자회사가 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차입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활력재생법상 기술활용사업혁신 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독립행정법인인 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 채무보증을 할 수 있음

- 채무보증은 기술활용 사업혁신 계획에 따라 외국자회사가 조직재편이나 지적 재산의 취득 등의 목적으로(경영자원 획득목적) 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적용
- 보증한도액은 10억엔이 원칙이고, 보증비율은 70%, 보증기간은 1년 이내이며 보증료는 무담보보증의 경우에는 1.0%, 유담보보증의 경우에는 0.5%

KU KONKUK UNINERSITY

2. 중소기업의 사업재생지원강화



- 상법개정
- 경영권방어
- 상법개정안
- 위원회초안
- 회계참여제도
- 중소기업지원

(1) 2009년 산업활력재생법개정으로"중소기업승계사업재생계획"도입

1) 재무상황이 악화된 중소기업이 장래성 있는 사업을 회사분할이나 영업양도를 통해 양도하고, 이를 다른 사업자가 승계하여 재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일본 중소기업의 우량 사업을 존속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함

(2) 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경우

1) 인허가 승계허용(고용 및 기존거래처 유지 조건)
2) 세제지원(등록면허세 감경, 부동산취득세 감경),
3) 금융지원(일본정책은행에 의한 저리융자, 신용보험지원, 투자육성회사에 의한 투자확대) 등 지원

KU KONKUK UNINERSITY

감 사 합 니 다